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0. 8.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8. 16. 이한동 의원 외 6명

나. 회부일자 : 2024. 8. 19.

다.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 8. 29.)

상정, 심사, 보류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 10. 8.)

상정, 심사, 의결(수정가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고병준 의원

### 가.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관련 기존 유사·중복 조례에 대한 통합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를 통·폐합 및 재정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규정  
(안 제6조, 제7조)
- 6)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  
(안 제8조~제12조)
- 7)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  
(안 제13조~제21조)
-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22조)

### 3. 검토보고 [장홍용 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이한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관련 기존 유사·중복 조례에 대한 통합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를 통·폐합 및 재정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제명

을 변경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그 지위와 지원계획을 명문화하고,
- 안 제6조~제7조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하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를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기타 효율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 2012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통합·운영을 원칙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통합권고 및 통합표준안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2024. 4월 기준 서울시와 12개 구에서 통합조례로 운영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양분되어 있으나 지원범위와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사각지대 발생 방지 등 정책 추진에 실효성을 위한 조례 통·폐합 및 재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행정과)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 조례」(가족행복지원과)에 통합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로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조기 정착하도록 생활편익 제공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증대를 위한 지원사항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 조례의 필요성은 타당하며, 상위 법령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관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입 증가에 따라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사회 적응과 문화 통합을 위한 맞춤형 연계 지원사업(예: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주관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발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자료

### 1. 관련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 적 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

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의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2. 마포구 외국인주민 현황

### ○ 외국인주민 현황

2022년 11월 기준 마포구 인구수는 362,408명으로 이 중 외국인 주민은 15,546명(4.3%)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3,327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953명, 외국인주민 자녀(출생)가 1,266명임

\* 2021년 14,499명 대비 1,407명 증가

(단위: 명)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 적동포	기타 외국인		
15,546	13,327	1,050	1,284	4,361	1,791	4,841	953	1,266

※ 출처: 행정안전부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불임)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4-94 관련
----------	-------------

발의년월일 : 2024. 10. 8.

발의자 : 복지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통합하는 등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내용

가. 제4조제2항 중 “설치하여야 하며”를 “설치할 수 있으며”로, “보전방안을 마련”을 “보전방안 마련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으로 수정함.

나.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23조로 수정함.

다. 제8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다문화가족 지원에”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구청장”을 “부구청장,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다문화가족지원”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다문화가족**”을 각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으로 수정함.

라. 제9조(중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수정함.

마. 제11조(중전의 제16조)제2항 중 “**제15조**”를 “**제10조**”로 수정함.

바. 제16조(중전의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를 “**제15조**”로 수정함.

사. 제17조(중전의 제22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설치하여야 하며”를 “설치할 수 있으며”로, “보전방안을 마련”을 “보전방안 마련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2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6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7조를 제22조로 하며, 제28조를 제23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다문화가족 지원에”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구청장”을 “부구청장,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다문화가족지원”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다문화가족”을 각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6조)제2항 중 “제15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u>설치하여야 하며</u>,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u>보전방안을 마련</u>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u>제4조에 따른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u></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u>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u>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교육청 · 경찰서 · 고용지원센터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u></p> <p>2. <u>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u></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u>설치할 수 있으며,</u> ----- <u>보전방안 마련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u>-----.</p> <p>③ (개정안과 같음)</p> <p><u>&lt;삭 제&gt;</u></p>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  
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  
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가정 지  
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  
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  
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삭 제>

<삭 제>

<삭 제>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제13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구  
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협의회는 **부구청장**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  
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

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단체, 기  
관, 학계 전문가

4.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대

<삭제>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에** -----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  
-----  
-----..

1. (개정안과 같음)

2. -----  
----- **외국인주  
민 및 다문화가족** -----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

4. ----- **외국인주민 및**

표자

④·⑤ (생략)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협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제15조 (생략)

제16조(위원의 해촉) ① (생략)

②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제17조 ~ 제20조 (생략)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20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략)

다문화가족 -----

④·⑤ (개정안과 같음)

⑥ -----  
-----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족 -----.

제9조(협회의 기능)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  
-----.

1. ~ 4. (개정안과 같음)

제10조 (개정안 제15조와 같음)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제10조 -----  
-----  
-----.

제12조 ~ 제15조 (개정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① -----  
----- 제15조 -----  
-----  
-----  
-----.

② (개정안과 같음)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

④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3조 ~ 제28조 (생략)

음)

④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 제23조 (개정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와 같음)